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75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권명호

김성원 · 김영식 · 박성민

엄태영 · 이종성 · 정운천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 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 고자 함.

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 확립과 관련한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(안 제23조제1항) 법률 제 호

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1항 중 "도지사"를 "특별자치시장, 도지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주	제2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	
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,	
특별시장, 광역시장, <u>도지사</u> 또	<u>특별자치</u>
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	<u>시장, 도지사</u>
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	
위탁할 수 있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